

# 龜尾市屠畜場設置 및 運營條例中 改正條例(案) 檢討報告書

## □ 條例의 目的

獸畜의 위생적인 도살처리를 통한 시민의 식육위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8.2.15 조례 제64호로 제정

## □ 改正 事由

도 물가대책 실무회의 의결과 경제기획원 협의를 거쳐 수수료를 조정 승인하고, 1992. 12. 8 도축장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(안) 준칙 시달

## □ 手數料 策定 過程

의견수렴(도) → 도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심의의결 → 경제기획원 장관과 협의 → 도승인 → 조례준칙 시달 → 시·군 조례 개정 → 시행

## □ 改正 內容

· 제 7 조 (수수료) 제 1 항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

별표

### " 도살 해체 수수료 요율표 "

| 現 行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|         | 改 正 (案)    |        |    |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|---------|
| 작업장별              | 수축의종류   | 기준 | 수 수 료   | 작업장별       | 수축의종류  | 기준 | 수 수 료   |
| 일반및<br>간 이<br>도축장 | 소 · 말 · | 두당 | 20,000원 | 간 이<br>도축장 | 소 · 말  | 두당 | 23,000원 |
|                   | 돼 지     | "  | 4,500원  |            | 돼지 · 양 | "  | 4,950원  |

· 수수료 인상율 : 소 · 말 15 %  
돼 지 10 %